

2023년 제1회 기간제 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2.3.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 인원 및 근무지(총 1명)

선발직종	담당업무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운전원	· 대형버스 등 관용차량 운전, 차량관리 및 정비업무 · 단속 외국인 계호 지원 업무 등 기타 출입국관리업무 지원	1명 (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신분 아님)
- 모집분야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1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재계약 가능하며 2년 이상 근무 시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추후 전환 예정

○ 급여기준

- 월 고정급 2,349,270원(세전)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 기타사항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 근무 장소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이 포함될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근무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채용 자격 요건

가. 응시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서류전형 우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중형·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실제 1년 이상인 자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중형·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만을 인정)

* 경력증명서에 중·대형 승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 인정

** 운전경력 1년 이상 기준은 공고일 기준 충족하여야함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나.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하며, 서류 전형에만 적용>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응시자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증빙자료 제출)

<저소득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분야(운전)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1년 이상)

※ 단, 사회복지요원 복무 경력은 제외되며,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어야만 인정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OEIC 700점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으로 다른언어도 이에 준하여 인정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최소 2단 이상)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공고일 이전 자격증취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채용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별첨 1】

〔서류전형 심사기준〕

◎ (운전원)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60점(차등 적용)
- 운전분야 근무경력 - 10점(차등 적용)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 10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점수	10	7	4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가장 높은 배점의 자격증만 인정)
- 어학자격증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5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언어자격증 2개 이상 (영어필수)	영어 또는 기타 언어 자격증 1개
점수	5	3

- 2가지 이상 어학자격증 합산 (영어 필수 /최대 상한점 5점)
- 인정기준: 영어 TOEIC 700점이상 등, 중국어 신HSK 5급 150점이상으로 다른 언어도 0에 준해서 인정

- 무도자격증 - 5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4단 이상	3단	2단
점수	5	3	2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최소2단이상)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 10점
 -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개지만 부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업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등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채용예정 인원)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3.2.3.(금)~2.10.(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사이트 게시
응시원서 접수	'23.2.8.(수)~2.10.(금)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3.2.16.(목)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통보
면접시험(예정)	'23.2.20.(월) 14:00	14:00 예정 (응시원서 접수처)
최종합격자발표	'23.2.21.(화)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통보
채용후보자등록 및 근로계약서 작성	'23.2.23(목)~2.24.(금)	
근무 개시(예정)	' 23.3.2.(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 응시원서 접수처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5층 운영지원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88 사리수산 빌딩 5층)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 단,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 '격리 기간 중에 있어 방문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확진 또는 자가격리 증빙자료를 첨부한 자에 한해 등기우편 접수 가능(접수 기간 내에 등기우편 도착하여야 유효함)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5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6. 제출 서류(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방문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방문만 가능)

-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공고문-붙임 1】
- 응시원서 1부 【공고문-붙임 2】
- 이력서 1부 【공고문-붙임 3】
- 자기소개서 1부 【공고문-붙임 4】
- 주민등록부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본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공고문-붙임 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공고문-붙임 7】

○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 운전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 업무(운전) 및 운행차종을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8】 작성제출)

○ 대형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직무관련 자격증,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무도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 장애인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행)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공고문 - 붙임 9】
 - 공정채용확인서 1부 【공고문 - 붙임 10】
 - 반명함판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통장 사본 1매(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7.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담당자 : 황유선, ☎ 031-364-570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경력(재직)증명서(필수)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8】 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⑩ 운전경력증명서 및 대형운전 면허증 사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⑫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⑬ 무도 단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⑭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⑮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⑯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2】

응 시 원 서

본인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3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3-1-	성명	(한글)		
응시분야	운전원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상기 본인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2023-1-	응 시 표 (운전원) 채용시험			
응시분야	운전원	성명		생년월일	
2023년 월 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명

【붙임 3】

이 력 서

(1쪽)

<필수>

한글

한자

영문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담당 업무(직무내용)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자격증 및 특기사항	관련 자격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요약하여 간략히 기술
----------------	-------------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여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여부
	해당여부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 마련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유인 유인

지 원 자 : (인)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년 월 일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배우자 직업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과정,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 사용(글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관련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관련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3년도 제1회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3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8】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 급 자

소속

직 급

연락처

성명

(인)

-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 및 운행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
(ex) 차량 운행 및 관리 (45인승 대형버스)
-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9】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3년도 제1회 기간제 근로자(운전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